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09.28 (금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홍민철, 박상종

<p>○ 사면 안전(건축부)</p> <p>- 현장 내 굴착사면은 인근 도로와 연접해 있고, 보호 시설 없이 노출되어 있어 우천시 사면 침식 및 붕괴가 우려되니 토질특성에 맞는 기울기 형성, 침식방지 시설(청탐지 덮개 설치) 등 안전조치를 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(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</p>	
<p>○ 전도재해 예방(건축부)</p> <p>- 분전함이 휴막이가시설 상단에 위치해 있으나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(계단)가 없어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 전도재해가 우려되니 가설 통로 설치 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</p> <p>- 현장에 설치된 맨홀은 전도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맨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였으나, 덮개가 파손되는 등 설치 상태가 미비하니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견고히 설치 및 고정하고 근로자가 개구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/p>	

○ 중량물취급 안전(건축부)

- 위험물보관소가 하수관 자재 위 불안정한 상태로 적치되어 있으니,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하고,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 불안정한 다단적치를 금지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24(4. 중량물 취급/기타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